



참고자료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장)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1)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 문제 제기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빈곤과 실업을 새로운 사회문제로 맞이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가난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제3섹터가—혹은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 위에서—고실업과 복지의 축소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개해온 일련의 실험들은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경제성장의 시기와 경로, 복지국가의 건설 경험,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확장 정도에서 유럽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 문제, 저성장에 따른 복지재정의 제한이라는 공통점은 우리가 유럽 사회의 경험에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나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되, 상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경제 모형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났다.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3섹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등 조금씩 다른 용어와 개념이 혼재된 채로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주로 학자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그러던 것이,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자활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만들어지면서 각 제도들이 배출한 조직들은 자신의 중·장기적 활로와 전망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때마다 사회적기업은 그러한 조직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 내지 목표로서 거론되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제3섹터 경제의 활성화에 관심

1) <동향과 전망>, 2009년 봄호(통권제75호)에 게재되었던 원고입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였습니다.

을 가지고 공동보조를 위한 협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혹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는 가운데, 2007년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은 이러한 분위기를 급격히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금 융자와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동체들이 늘어났다. 불과 5~6년 전만해도 생경하게 들리던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이제는 상식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어(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는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오해를 낳는가하면, 혹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이론적 성과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을 고려한 개념의 재해석을 거부하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노동부는 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에는 ‘사회적기업’이란 명칭 자체를 쓸 수 없다고 못을 박는가하면, 비정부기구(NGO)들은 정부가 그 용어의 독점사용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탄력적인 개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라는 네트워크는 2008년 6월, 참가단체를 확대하면서 조직의 명칭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변경했다. 자신들의 지향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길고 오랜 토론 끝에,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이들 용어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 실천운동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가치와 관련된 의미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념들이 명확히 구분되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고 있어서 의미의 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복지)운동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당면한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 우리나라 일각의 사회(복지)운동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올바른 개념에 근거한 사회적경제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일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기초해있다. 제2장에서는 우

리나라의 용례에 직접 영향을 준 유럽의 사회적경제 개념이 어떻게 생성·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피고, 제3장에서는 흔히 혼용되고 있는 제3섹터, 사회적기업 등의 개념과의 차이, 그리고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관련 개념들이 갖는 내용적 의미의 차이를 밝히며, 제4장에서는 이상의 개념적 구성요소들 가운데 한국 사회에 적용할 기준들을 가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념의 탄생과 발전 과정

우리말의 ‘사회적경제’는 영어의 social economy, 불어의 économie sociale의 번역어이다. 그리고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00년을 전후해서 활동했던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 1848-1932)였다. 개혁적인 성향의 지드는, 당시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경제가 유발하게 되는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더욱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하는 대안적 체제로 상정했던 것 같다(Münkner & Kang, 2006: 204). 기독교사회주의자로서 협동조합운동에 심취했던 그의 의도는 확실히 사회 변혁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주창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노동조건의 개선, 주류 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Vienney, 1994 ; Münkner & Kang, 2006에서 재인용)으로 설정했던 점을 미루어보면,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꿈꾸는 사회주의자이기보다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실용적 개량주의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뿌리를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루이 블랑(Louis Blanc)은 말할 것도 없고, 생시몽(Saint Simon)이나 푸리에(Fourier)같은 사회주의자 역시, 사회적경제의 탄생 배경에 한 몫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시장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직, 예컨대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의 조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01년에는 그 전까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으며 철저히 불온시 되어오던 민간결사체(association)들이 법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mutual insurance), 민간단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번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정치·사회적 개혁을 지향했던 이들 조직은 법적 타협을 이루한 다음부터 체제 내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협동조합부문과 자본가들의 시장경제는 1920~40년대 사이에는 각기 분업을 해오다가, 이후에는 같은 활동 영역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협동조합 역시 시장경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상호공제조합은 주로 의료보험 기능을 수행하다가 국가 주도의 의료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보조하는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더군다나, 민간단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깊이 관여하게 된다.

프랑스 국내에서 각각의 발전 경로를 걸어오던 이들 조직은 마침내 1970년, 사회적 힘을 키우고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면서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전국연락위원회(CNLAMCA)’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정체성을 표현할 개념어를 물색하던 끝에, 사회학자 앙리 데로쉬(Henry Desroches)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경제현장’을 채택하게 된다(엄형식, 2008: 50). 샤를 지드 이후 잊혀져 있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9년에 유럽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를 채택했는데, 그에 따르면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Roelants, 2002 ; 엄형식, 2008: 52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적극성의 정도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²⁾.

2) CIRIEC가 진행한 연구보고서(2007)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 가운데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은 ‘사회적경제’ 개념이 각 영역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데 반해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비교적 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형식, 2008: 53).

한편,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세기 말 처음 등장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애초 시장경제에 반대하고 그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시장경제와 대립되는 어떤 것으로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경제체제의 종속물로 전락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사회적경제의 대표 모델로 거론 돼온 협동조합³⁾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도 경쟁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탓에,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경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전문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협동조합은 일찍이 시장경제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이들의 생존 욕구는 더 이상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비전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요컨대, 이익(interest)이라는 협소한 패러다임을 택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이론에서 ‘조직된 행동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e dimension of organized action)이라는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다(Evers & Laville, 2004: 93). 결국 조직의 구성원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만이 강조되고, 그 조직의 범주를 넘어서 어떤 집합적 행동이 갖는 공적 역할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 발전되어 온 ‘사회적경제’의 개념 하에서는, 폴라니(Polanyi)가 제시했던 세 가지의 경제원칙 가운데, 호혜성(reciprocity)이나 재분배(redistribution)⁴⁾의 원리는 시장이라는 중심 유형에 비해 주변적인 것 내지 보조적인 것으로 폄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부터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전통적 ‘사회적경제’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대의 경제(économie solidaire)는 사회운동으로부터 멀어진 ‘사회적경제’에 대한 반성이자, 관료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국가 주도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관해 샤니알과 라빌(2008: 147)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섹터를 프랑스식으로 이해하자면 ‘사회적경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나타난 프랑스 경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이한 조직들을 하나의 명칭 아래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 연대에 기반한 시민 경제(civil and solidarity-based economy)의 관점이 살아났다는 것이

3) 포케(Fauquet)와 비에니(Vienney)는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협소하게 정의해서 민간단체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연히 협동조합 모델이 ‘사회적경제’의 표준처럼 자리잡게 되었다(Evers & Laville, 2004: 92).

4) 자본제적 시장을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제도처럼 여기는 주류 경제학적 관점을 크나큰 오류라고 지적했던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경제통합의 유형을 크게 호혜성, 재분배, 교환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회조직 원리를 대칭성, 중심성, 시장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시장사회라는 지배적 개념으로부터 다원적 경제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원적 경제란 시장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경제적 원리들과 결합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3. 제3섹터, 비영리부문, 그리고 사회적기업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로 확장해 보더라도, 제3섹터의 역사는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구체적 상황과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제3섹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장과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부처 및 공공정책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그리하여 유럽 사회의 맥락에서는 복지서비스라는 광범한 영역 안에서 여러 섹터들이 보호된 시장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 전통이 있어왔기 때문에, 자연히 제3섹터는 중간적(intermediary)이고 다원적(pluralistic)인 특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유럽의 제3섹터 개념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서 ‘복지 혼합’(welfare mix) 내지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일부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Evers & Laville, 2004: 14).

이에 반해서, 미국의 전통은 시장과 국가는 사회의 양대 기둥 사이에서 시장과 국가의 실패로 인해서 제3섹터가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역사적 관점이 약한 미국의 학풍은 경제학 이론에 의지해서,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한 시장의 실패와 소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실패로 말미암아 제3섹터가 그 둘과는 별개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3섹터는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비영리(non-profit) 부문’과 등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비영리부문은 공식적이며 정부와는 독립적 관계로 자치적이고, 이윤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된다(Salamon & Anheier, 1997).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윤 배분의 제한—‘자본의 분담금이나 소득의 형태로 조직의 이윤을 받는 소유자가 없고, 이윤을 낼 수는 있지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준으로 강조된다(안하이어 & 사이벨, 2002: 42 ; 김승현, 2008: 32). 앞서 프랑스의 예에서 보았듯이, 특정

개인의 이윤 추구는 금기시하되, 협동조합 방식의 집합적 이익 추구는 당연시하는 유럽의 제3섹터 개념과 견주어보면, 조직의 이윤 배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비영리부문은 개념상 확실한 차이를 드러낸다. 예컨대, 유럽 제3섹터의 대표 유형인 협동조합이 미국식 개념으로 정의하면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영리부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 이외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섹터를 대체로 시민사회 부문과 등치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국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견지해야 할 독립성을 유독 강조하는⁵⁾ 미국의 지적 전통에 대해서도 유럽의 이론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유럽의 제3섹터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 부문과 밀접히 협력하고 때로는 통합되는 경험을 해왔고, 따라서 제3섹터를 국가 부문과 대립되는 시민사회 섹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럽의 논자들은 ‘제3섹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일부’라는 가설을 발전시켜왔다(Evers, 1995).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제3섹터를 불어권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를 범유럽 차원의 운동적 의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돼왔으나, 점차 지원과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개념의 범위를 넓고 약간의 이견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각 나라 근대사의 전개 과정이 다르고 그로 인해 정치·경제적 상황이 상이한 데서는 오는 차이였다. 예를 들어, 독일은 오늘날 협동조합의 전통이 단절된 나라에 속한다. 20세기 초기에는 협동조합들(소비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급격히 팽창했으나 파시스트 체제를 겪으면서 거의 파괴되었다. 이후 사민주의자들에 의해 일부가 재조직되었지만 이미 사회적·도덕적 자원을 상실한 상태에서, 생존에 성공한 협동조합일지라도 (특히 주택부문의 협동조합들은) 거대하고 관료화된 조직으로 변했고, 부패와 스캔들을 남기고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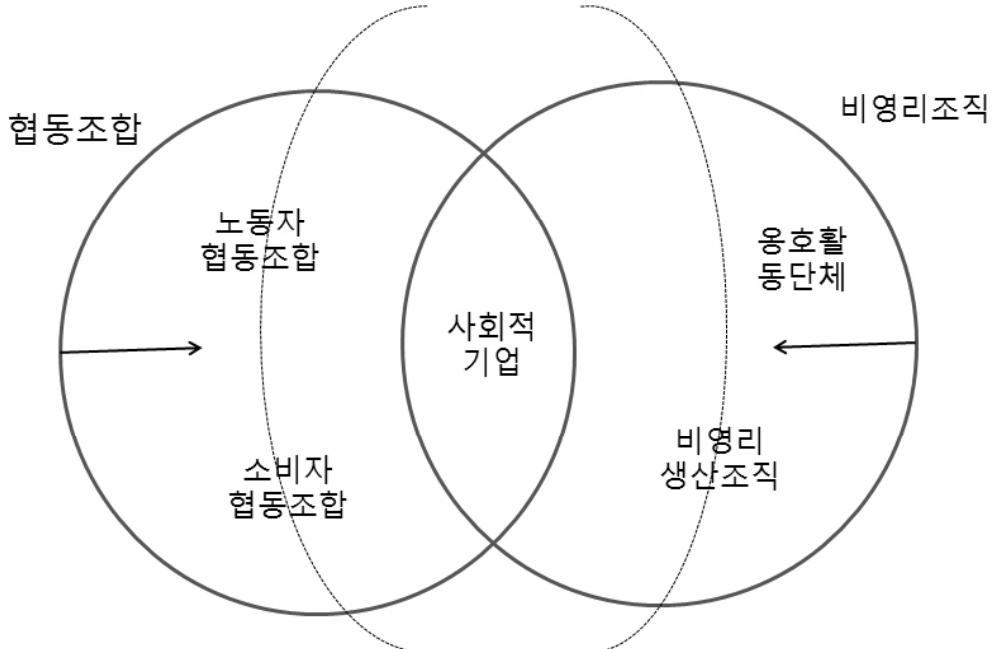
5) 미국 비영리부문의 주요 특징으로 독립성을 강조하는 배경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오코넬 (2008) 을 참조할 것.

뿐이다(Weiner, 1994 ; 보데 & 에베르스, 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오늘날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의 기능이 상실된 국가들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형태를 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링크너(Münkner) 등은 첫째, 협동조합이란 전통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는 상호부조 내지 자조(self-help)조직인데 반해, 오늘날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연대’란 내부 구성원만이 아닌 비회원들의 이익까지를 고려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둘째, 협동조합은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공공부문의 지원과 재정적 후원을 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의 통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셋째, 현대적 용법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협동조합보다는 오히려 비영리조직이나 제3섹터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프랑스식 개념 정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활동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각국의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의 경우, 조세법 제14조에 정의된 경제사업체(wirtschaftlicher Geschäftsbetrieb)는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즉, 독일에서는 경제사업체의 목적이 그 조직의 내부 정관에 의해 결정될 뿐, 영리를 추구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Münkner & Kang, 2006: 213-8).

이처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제3섹터를, 협동조합 등을 지칭하는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3섹터를 ‘비영리부문’으로 해석하는 미국적 전통에 대해서는 대립적 위치에 선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 결국 제3섹터의 개념에 관한 유럽과 미국의 전통은 각기 대립적인 요소들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이 생산한 일체의 산출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기업 형태의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 대립점에는 경제활동의 성격이 매우 약한 민간단체—심지어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자원봉사활동 조직처럼) 비시장적, 비화폐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있다. 또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회원제 민간단체처럼) 상호이익(mutual interest) 집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빈곤 문제에 대항하는 조직, 환경운동 단체처럼) 보다 넓은 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 조직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푸

르니(Defourny)는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양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1> 협동조합 및 비영리 부문의 교차 지점인 ‘사회적기업’



출처: Defourny (2001). Borzaga & Defourny.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위 그림에서, 가운데 원점에 가까이 위치한 조직일수록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특정한 집단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이해집단이 단일한 협동조합에 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의미의 민간단체(association)에 비해서 생산활동과 관련해서 경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고 높이 평가한다. 비영리부문에 속한 조직들 중에서도 생산에 관여하는 민간조직은 단순히 옹호활동을 하는 기구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재단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에 훨씬 가까운 성격을 띠는 것이다(Defourny & Nyssens, 2006: 8-9).

미국과 유럽이 각각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이란 개념을 경원시 해왔던 데 비해서,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부터 양쪽 진영이 공히 채택하고 즐겨 사용해온 용어이다. 다만, 그것이 지칭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영리기업’(예컨대, 사회

공현기업)에서부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데 반해서, 보통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공익성을 띤 사회적 목적과 운영의 자율성,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이윤 배분의 제한 등 규범적 내용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⁶⁾.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혼동되어 이해되는 데 반해서, 유럽에서는 흔히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주도의 사업을 가리킨다(엄형식, 2008: 105).

10여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내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실업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까닭에, 사회적기업을 사회공헌기업 정도로 이해하는 미국의 탈규범적 전통보다는 시장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온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 역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유럽의 제도적 상황과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구상과도 다소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로 유럽의 이론과 실험을 참고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의도하는 한국적 개념 정립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합리적인 분류법을 찾는 데 있지 않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른 사회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접목되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역사적이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유럽의 논의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럽의 담론을 출발점으로 하되,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서 재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유럽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사이에는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기업’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별 주체를 가리키고, ‘사회적경제’는 여러 경제주체들을 포괄하는 부문

6) 유럽의 제3섹터 연구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를 다음 9가지 기준으로 내리고 있다. 경제 및 경영의 차원에서는 ①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 ②자율성(autonomy)이 높을 것, ③재정자립을 위해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할 것, ④최소한의 유급노동이 있을 것, 사회적 차원에서 ⑤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이 명확할 것, ⑥욕구나 목적이 같은 그룹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초동 주체가 될 것, ⑦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 정도에 좌우되지 않을 것, ⑧사업에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⑨이윤 배분에 제한이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이다(Nyssens, 2006: 5-6).

내지 경제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서구의 이론에서 social enterprise는 각 나라마다 법적 형태와 명칭이 다른 경제주체들을 총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영국의 커뮤니티기업(community businesses)과 노동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s), 이탈리아의 사회협동조합(co-operative sociali), 프랑스의 노동통합기업(entreprises d'insertion), 스페인의 특별고용센터(centros especiales de empleo) 등을 모두 ‘social enterprise’로 통칭하는 것이다. 어떤 사업체를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용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경제’와 다른 점은 <그림 1>에서 드푸르니가 설명하고 있듯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제조직 일수록, 통상의 협동조합처럼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보다 넓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또한 시장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상업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두 개념의 출현 시기에 시차가 있으므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상기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은 복지국가의 경제·사회적 조건이 변화된 속에서 종래 조직들의 한계를 넘기 위해 혁신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등장한 진일보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두 용어는 오늘날 공존하고 있으며, 두 개념의 상관관계는 다소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논자에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만을 사회적경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영리조직들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장원봉, 2006: 33)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혼란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4. 한국의 ‘사회적경제’, 그 내포와 외연

1) 개념의 구성요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룰 차례이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은 자

첫 연구자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훌러버릴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연구자에 의해 내려진 개념 정의가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경우, 아무도 그러한 용법에 주목하지 않고 그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경제’라는 우리말 개념의 의미군(意味群)들 가운데 비교적 공감대가 넓은 부분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유럽의 담론을 텍스트로 삼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원칙 하나는 ‘사회적경제’라는 우리말이 연상시키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용례가 정의(定意)의 다른 기준들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그것이 ‘경제’인 이상,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럽의 *économie sociale*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명시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말의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영역들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회적기업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라면, ‘사회적경제’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을 생산하거나 교환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에는 생산 조직 뿐 아니라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운동(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LETS)처럼 소비나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조직들을 모두 망라한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준들은 흔히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관한 구분법이 제시하는 영역들인데, 유럽 담론의 개념 기준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 타당한가를 따져보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형도 모색할 것이다. 보통 유럽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은 ①조직의 목적에 관한 규정, ②조직의 형태에 관한 규정, ③운영 원칙과 규범적 원리에 관한 규정, ④지원 법규에 관한 규정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라빌(Laville)은 여기에 ⑤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도 한다(Levesque & Ninacs, 2000: 112-129 ; 장원봉 2006: 32-37).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시,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

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란 용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 핵심은, 자본가 개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익 추구를 가능케 하는 조직들을 하나의 부문으로 묶어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요, 정치적 비전의 제시였다. 그러나 지배적인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입장을 포기하는 순간, 사회적경제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주류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에 순응해버린 뒤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더 이상 비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가 ‘대안 경제’ 혹은 ‘연대의 경제’라는 이름으로 본연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것은, 샤니알과 라빌의 말대로, 1970년대부터 프랑스의 제3섹터 진영이 ‘사회연대에 기반한 경제’라는 관점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 개념의 출발점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 데 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 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

‘경제’ 앞에 붙은 ‘사회적’이라는 관형어는 보통 ‘개인적’, 또는 ‘개인을 우선시 하는’이라는 의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는 인간의 모듬살 이를 개별화된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규범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고 그러한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예컨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social goal)을 지닌 기업을 말하는데, 이 때 사회적 목적이란 ‘공동체(community)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보편적(general) 목표는 수많은 구체적(specific) 목표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특정 범주의 시민들(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돌봐야 할 아동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 이주노동자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닌 욕구를 해소한다든지, 취약계층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Defourny & Nyssens, 2006: 30).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WES)⁷⁾의 의뢰를 받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는 드푸르니는

7) “프랑스에서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가 다소간 갈등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던 데 반해,

이 부분을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도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는 것이 개념의 내포를 구성하는 일차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형태에 관해서는 결국 개념의 외연, 즉 범주의 문제이므로 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셋째, 규범적 원리에서는 과연 사회적경제가 자본이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유럽 제3섹터 연구소들의 네트워크인 EMES⁸⁾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관한 9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경제의 규범적 요건으로 원용해볼 수 있는 것은 ①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명확한 목표(An explicit aim to benefit the community), ② 고도의 자율성(A high degree of autonomy), ③ 소유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의사결정력(Decision-making power not based on capital ownership), ④ 이윤 배분의 제한(Limited profit distribution) 등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관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첫 번째 요건으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고, 자율성과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의사결정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권리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원1표주의’가 아니라 ‘1인1표주의’에 입각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하며,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조직이어야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이란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개념

프랑스 이외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받아들인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흐름과 이에 자극받은 전통적 ‘사회적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불어를 사용하면서 프랑스의 상황에 민감한 벨기에 왈룬지방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 1988년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CWES)가 결성되었다. CWES는 경제학자 드푸르니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1990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채택하였다.”(엄형식, 2008: 52)

8) EMES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에 관해 연구해오던 학자 및 연구자들이 보다 긴밀하고 협동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 1996년 유럽연합(EU)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한 네트워크이다. 최초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제목,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의 철자를 따서 EMES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이들의 관심 주제는 제3섹터와 같은 보다 넓은 영역이다(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Available: <http://www.emes.net/index.php?id=2>).

이 처음 탄생하고 발전해온 유럽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었고,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의 유산은 오늘날 사회적기업의 성격에도 남아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⁹⁾들 가운데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장기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은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 있는 보편적인 형태이다(Defourny & Nyssens, 2006: 15). 따라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더라도 첫 번째 기준—‘그 경제조직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사회계층 간의 수직적 연대와 호혜성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 국가의 개입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성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산 보조를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는 선을 정확히 유지하는 데는 구성원들의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원 법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겨서 정부는 이 법규가 인증한 사업체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3섹터의 번영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관점에서는 협소한 법률적 정의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때 사회적기업이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의 폭넓은 개념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경제 활동의 형태에 주목한다. 연대성에 바탕한 경제이므로 시장 부문 뿐 아니라, 재분배와 호혜성의 원칙이 통용되는 부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따라

9) 흔히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이란 궁극적으로 재정상 완전자립을 이루어서 정부로부터는 일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치이다. 다비스터(Davister) 등은 유럽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제1유형은 장애인들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sheltered employment”(Ireland, Portugal), “sheltered workshop”(Belgium, Denmark), “Samhall network of sheltered workshops”(Sweden) 등이 그것이다(Defourny & Nyssens, 2006: 15).

서 시장 판매를 통한 상업 활동, 공공자금의 조달, 기부 및 후원금의 모집, 비화폐적 자원봉사활동 등을 모두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모든 자원의 혼합을 용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시장 판매 수입이 없는 비상업활동의 경제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부분적이더라도, 시장에서의 상업 활동과 혁신적 경영을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속한 조직 가운데는 지역화폐운동(LETS)처럼 철저히 비시장적 활동을 하면서도, 앞서의 사회적 목적과, 운영 및 규범적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경제조직이 있을 수 있다.

유럽의 담론에서는 다소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1>을 놓고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들 가운데 앞에서 제시한 기준요건들(사회적 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규범적 원리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들 가운데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들을 제외한 엔지오(NGO)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로 생산에 관여하기 마련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부분집합이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경제활동 조직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2) 개념의 범주

앞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경제조직들의 집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

(1)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우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양극화와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돌봄노동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가 하면, 폐자원을 수거·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은, 보살핌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재활용 사업 역시, 고용 창출의 효과 외에도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그 유익함이 돌아가는 것이니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이란 노동부의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니며,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따르면서 스스로를 사회적기업 내지 준(準)사회적기업이라 인식하는 모든 사업체들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활공동체의 경우도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자활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안적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오늘날 자활공동체는 근로빈곤층이 기존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노동통합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며 사회연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황미영, 200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수급자 대신 그 이상의 차상위 실업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서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알선하도록 위탁하는 제도이므로, 공익적 목표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보호작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들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근로의 기회와 기술·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험되었던 노동자협동조합의 유형은 대개 열악한 조건 속에서 현실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지만, 노동과 자본이 일치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의 생산조직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늘 잠재돼 있다고 하겠다.

(2) 생활협동조합과 의료생협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 가운데 소비영역의 대표 주자는 소비자협동조합인 생협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는, “올바른 소비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보급”, “자발적 생명문화의 창조와 확산”, “협동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운동” 등 (박봉희, 2008)으로 표현된다. 1970년대에 생필품의 구매가 어려웠던 농촌, 산촌을 중심으로 마을 구판장 형태로 시작되었던 소비조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도농(都農) 간의 공동체적 관계 회복을 지향해왔다. 그리고 1999년 생협법의 제정을 계기로 조직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졌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생활협동조합은 176개 단위조합에, 조합원이 33만 7천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18개의 의료생협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생협 역시, 제도적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자립적 관리 운영, 참여의 자발성 높이기 등을 부단히 자기 과제로 추구한다’(황인섭, 2004: 1588-9)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시장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기존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 공동육아 조직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우이다. 국공립 유아원보다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선호해서 생겨난 유럽의 제3섹터 부문 유아원들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모들의 재정 분담과 교육 및 운영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처음 시도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2007년 현재, 전국에 61개가 있다.

노대명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구성과 성격적 특징을 <표 1>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이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사업 단위를 광의의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해서 이것이 다시 사회적경제의 한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노대명, 2008: 76). 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유럽에서는 당연히 사회적기업에 포함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한, 사회적경제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앞서의 필자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표 1> 한국 사회적경제의 구성과 특징

성격 I	성격 II	유형 분류	세부 설명
국가	정부 의존 ▼ ▼ ○ ○ 사회적 경제 ○ ○ ▲ ▲ 시장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 자립 지향	장애인 보호작업장 / 노인생산공동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비영리 ▲ ○ ▼ 영 리	시민단체 (서비스 공급형)
			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새마을금고

출처: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또한, 엄형식은 벨기에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WES)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전통적 사회적 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구분한 후, 전자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그리고 후자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엄형식, 2008: 121-3).

<표 2> 한국 사회적경제의 구성

전통적 사회적경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민간단체	
	새로운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출처: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123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류법은 모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관제 협동조합까지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의 대표 유형으로 보는 불어권의 개념을 가감 없이 대입시킨 결과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류는, ‘오늘날 한국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 유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백 만 명의 조합원과 수백 조 원의 사업규모를 가진 그들 관제 협동조합들을 제외시킬만한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이에 관해서는 3절에서 다른 쟁점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일반 결사체의 형태를 띤 비영리 경제조직들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한두 가지 경우만을 예시하기로 한다.

지역화폐 운동(LET'S)은 미리 등록한 회원들이 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2000년에 생겨나 현재까지 지속돼 오고 있는 대전의 “한밭레츠”는 580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두루’(=1원에 해당)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거래한다. 이 조직은 지역 내에 의료생협(“민들레의료생협”)과 공동육아협동조합(현재의 “꽃 피는 학교”)을 먼저 결성해서 기반이 잡히자, 주로 양쪽 조합원들을 가입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정금액의 회비를 내고 가상의 화폐를 이용해서 자신이 거래하고 싶은 재화나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등록소에 등록을 하면, 그 결과가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등록소에는 주고 받음의 결과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렇게 돈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하고, 개인이 필요한 만큼 ‘두루’라는 돈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 철저히 비시장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종 생활용품들을 재활용해서 바꾸고 나누어 쓰는 환경운동 단체를 교환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면, 각계로부터 금품을 모집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배분해주는 기관은 분배 영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연대은행” 같은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은 빈

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벌이는 각종 복지사업이나 개인(혹은 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 호혜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념의 외연에 관한 쟁점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협동조합은 대안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분류돼 왔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유형을 논할 때에도 유럽의 분류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학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은 상호공제조합 및 민간단체와 함께 주된 패턴으로 거론되며,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명칭과 형식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동 범주에 포함시키기 일쑤이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이 시장경제에 맞서서 자구책으로 조직한 19세기 유럽의 협동조합과, 5·16 군사쿠데타 이후 “조합원들의 자율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제로 설립된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정병호, 1983: 33)”을 과연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 1961년 군사정권은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협법을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농협의 공사화를 진행했으며 이는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장종익, 2002 ; 장원봉, 2006: 237-8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정은 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의 힘센 이익집단과 자기 이익을 표출하지 못하는 주변집단이 나뉘는 정치적 소용돌이 상태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협동조합은 반(反)협동조합적으로 전개된 경제개발 정책 하에서 역설적인 동반자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협동조합은 자기가 아닌 남들의 자본축적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존립해온 것이다’(정병호, 1983: 39).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농협 등은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른바 ‘사회적경제’의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생겨나고 발전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기계적 명목론에 치우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들을 사회적경제로 범주화 한다면, 그 중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에 사용된 원칙들과 충돌하는 조직들까지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면, “경제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개념 적용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농협처럼 발전국가 체제에서 만들어진 조직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민주화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보다 관대한 범주화를 주문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적 관심은 과거에 한국에도 ‘사회적경제’로 부를만한 조직들이 넉넉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대표할만한 유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역사적 과정에 투영된 조직의 성격을 불문하고 명칭과 형식만을 분석의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240만명의 조합원과 1,200여개의 지역조합을 가진 농협, 17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수협, 조합원 50만명의 산림조합 등이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범주화는 우리의 경험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역량을 키워서 경제를 민주화 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적 측면에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없다. 또한 명목론에 입각해서 상호공제조합을 사회적경제의 주된 유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수 있는 공제조합의 예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름만 ‘협동조합’일 뿐 결성과정과 현재 조직의 성격이 협동조합의 원형과는 거리가 멀고, 상호공제조합은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문 한국 사회에, 외국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회과학의 개념도 어떤 사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반영한 집단적 경험의 산물인 바,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대표 유형을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결사체로 규정하게 된 것은 그런 유형의 조직들이 프랑스 사회에 실제로 다수 존재해왔고, 동시에 그 조직들이 사회연대의 정신과 민주적 원칙들을 비교적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럽 개념의 형식이 아닌 규범적 내용을 중심에 놓고 따진다면,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수 백 가지 종류의 민간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예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예	
생 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 사업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소 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운동 네트워크
교 환	지역화폐, 아나바나운동 단체 등	
분 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등	

이 가운데 생협과 같은 소비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이 등장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부자들을 위한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自助)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보다 넓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의 기준이었던 바,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살림> 생협은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하지만 <한살림>은, 앞에서 말했듯이, 협동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목적이며, 사업이 곧 운동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1인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주요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사업과 운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중 략) 이렇게 모인 자본을 밑천으로 삼아 진행되는 사업과 운동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경영을 목표로 삼는다. 자발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을 통해 생긴 잉여도 이후의 사업과 운동을 위해 적립하여 생명살림의 기초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회사와 달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들의 자치와 협동이 <한살림> 운동의 중심인 것이다. (중 략) 따라서 <한살림> 생활협동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생태적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한살림’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자신이 속한 한 영역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생명의 전체 원리를 체득하려는 학습을 통해 지금 뿌리가 뽑혀 가는 농업 생산을 되살리고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윤형근, 2003)

또한 <두레> 생협은 2006년 여름,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수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우리 생산자는 소비자가 지킨다! …… <두레생협연합회>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던 한 가족과 같은 생산자들에게 끊임없는 격려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자를 돋는 관계를 넘어서 그들이 정성과 땀으로 일궈가고 있는 생명 농업을 함께 지켜가겠다는 소비자로서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생산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지금까지 <두레생협연합회>가 지향해 왔던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략) 뿐만 아니라 조합원 생산지 방문, 교류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물품” 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해오고 있다.”(두레생협연합회, 2006)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로 추구하는 가치의 공공성을 낮게 평가하는 일부의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는 위의 인용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이 매우 편협한 시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생협들은 학교급식, 광우병소 수입, 한미FTA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발언과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운동 및 시민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자신들의 조직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더욱 큰 체제의 문제에 부단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개혁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자본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민주적 운영을 앞세우는 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5. 결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사회적경제에 거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커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개념의 윤곽이 비슷하게나마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이는 왕성한 논의는

오히려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를 용어가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 실천 운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글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개념의 구성요소를 새롭게 정리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개념의 내포)와 사회적경제에는 어떤 유형의 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개념의 외연) 하는 것이 이 글의 관심사였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출발은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 데 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관행어는 인간의 모듬살이를 개별화된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규범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고 그러한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요소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는 자본의 발언권을 중시하는 시장적 기제에 반대하므로 자본에 의해 이윤이 배분되는 것을 제한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사결정을 선호한다. 그런 점에서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율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이다.

이상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공통점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생산 뿐 아니라 소비, 교환, 분배 등 일체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을 총칭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서, 사회적경제는 시장에서의 상거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같은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도 사회적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규범적 기준들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그 범주가 너무 협소해져서 실천운동의 전략적 측면에서 쓸모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접근으로 치우치면 역사적 맥락에 깃들어있는 본질을 놓치기 마련이다.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샤니알과 라빌(2008)의 충고를 상기한다면, 한국적 맥락의 정의에서도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호혜와 연대의 원리 속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 자리사업 조직,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생산조직과, 생협 등의 소비자협동조합 및 공동육아협동조합, 자선모금단체와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지역화폐운동 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생산과 소비 영역을 결합한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 조직이나 공정무역 운동 단체 등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산영역의 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향상되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소비 혹은 분배와 같은 다른 경제영역에서의 호혜적 조직화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현 (2008).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서울: 집문당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권 2호, 35-71
- 노대명 (2008).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2008년 4월호, 62-85
- 두레생협연합회 (2006). 우리 생산자는 소비자가 지킨다(2006년 8월 7일자 보도자료), Available: <http://www.dure.coop/>
- 링크너, 한스 & 강일선 (2006). Social Economy and Promotion oriented Economics: How do We Define a Common Denominator for Enterprises in Social Economies, Co-operatives and Non-profit Organisations?”.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24권 1호, 203-224
- 박봉희 (2008).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워크숍 『사회

적경제의 모색과 실천』(2008.10.7) 발표문

- 샤니알 & 라빌 (2008). 프랑스 시민사회의 경험: 정치, 경제적 차원 간의 간극을 잊기 위한 시도. 에베르스 & 라빌 편저(2008).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서울: 나눔의 집
- 안하이어 & 사이벨 (2002).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아르케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오코넬, 브라이언 (2008). 『인디펜던트 섹터-미국의 비영리부문의 역사』. 서울: 아르케
- 윤형근 (2003). 생활협동운동과 한살림. 전국소식지 『한살림』, 8호. Available: <http://pds.hansalim.or.kr/>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장원봉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최 활동가대회(2008. 12. 11) 발표문
- 정병호 (198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회고와 전망.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1권 1호, 31-45
- 황미영 (2007).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권 2호, 73-104
- 황인섭 (2004).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비영리 조직성 및 특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7권 6호, 1569-91
- Defourny & Nyssens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M. Nyssens(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Y: Routledge
- Evers, Adalbert (1995). Part of the welfare mix: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Voluntas*, 6(2), 159-82
- Evers, Adalbert & Laville, Jean-Louis (eds.) (2004). *The Third Sector in Europe*, UK: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Laville, Jean-Louis (2001). France: social enterprises developing 'proximity services'. C. Borzaga & J.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Nyssens, Marthe (ed.)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Y: Routledge
- Salamon, Lester M. & Anheier, Helmut K. (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